

입사지원서

지원분야	기아 초록여행 제주사무소 운영		접수번호	
성명			성별	□남 / □여
생년월일				
현주소				
연락처	전화	이메일		
	휴대폰			
학력사항	최종학력 □고졸이하 □고졸 □대졸 □대학원수료 □대학원졸			
	전공		부전공	
직무관련 기술 (자격증 등)				
총 경력 (년 월)	근무기간	기관명	직위	담당업무
직무관련 기타 경험	※ 자원봉사활동 등			
병력관련	병력의무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√ 하시오 □병력필(기간 :) □병력이필 또는 면제			
장애유무	해당되는 곳에 √ 하시오 □장애인 / □비장애인			
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 지원날짜: 지원자: (인)				

(사)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장 귀하

☐ 자기소개서

○ 성장과정, 생활신조(400자 내외)

○ 학교생활, 경력사항(400자 내외)

○ 지원동기, 입사 후 포부(400자 내외)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

본인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의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목 적	-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, 채용여부의 결정 - 경력 · 자격 등의 확인(조회 및 검증) 및 우선채용대상 자격 판단 - 민원처리 및 분쟁해결, 법령상 의무이행
수집항목	- 필수적 정보 : 개인식별정보(성명,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, 국적, 주소 및 거주지, 이메일, 자택번호, 휴대폰 번호 등) - 선택적 정보 : 개인식별정보 외에 입사지원서 등에 제공한 정보(학력사항, 외국어사항, 자격사항, 수상경력, 보훈/장애 관련정보, 병역사항, 리더십 및 사회봉사활동 관련정보, 해외체류 및 교환학생 관련 정보, 경력사항, 평판조회를 위한 추천인 정보, 지원경로, 기타 채용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정보 등)
보유 이용 기간	위 개인정보는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 동안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· 이용 됩니다. 단, 위 기간 경과 또는 지원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에는 민원처리, 분쟁해결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· 이용됩니다.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	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심사 및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.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「동의하지 않음」을 선택한 후 본인이 등록한 선택적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 · 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수집·이용 동의여부	- 귀 협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필수적 정보(동의함 ☐ / 동의하지 않음 ☐) * 선택적 정보(동의함 ☐ / 동의하지 않음 ☐)
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	- 귀 협회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 (동의함 ☐ / 동의하지 않음 ☐)
민감정보 동의여부	- 귀 협회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민감정보 : 건강(장애사항 등록자에 한함), 범죄 경력 (동의함 ☐ / 동의하지 않음 ☐)

년 월 일

응시자 :

(인)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(사)한국지체장애인협회제주도협회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